

2023년도 (재)하남교육재단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	254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3년 (재)하남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 - ※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
 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2. 주요내용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
-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
 - 청소년 전문가 인력풀(진로진학, 직업체험) 구성
 - 자기 주도적 학습, 학부모 교육(진로진학),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등 진학 프로그램 운영
-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진로 사업 확대

3. 세부내용

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3년	2022년	증감액		
1	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	680,000	680,000	-	-	-

□ 출연대상

○ 설립근거

- 「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06. 4. 19.
- 설립목적 :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·육성과 지역 교육 발전 연구·개발 및 장학사업 추진
- 소재지 :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51 에코타운 2단지 상가 지하201호

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
-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사업
- 진로·진학 체험 지원사업
- 지역교육발전 연구·개발 지원사업

□ 출연금액 : 680,000천원 (2022년 680,000천원)

□ 출연근거

- 「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16조

□ 필요성

- 인구 유입 등으로 학교·학생 수 증가에 따른 사업 대상 확대
- 캠퍼스 투어, 우수기업 견학 등 신규 사업 추진
- 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인력충원 및 사업비 증액

□ 검토의견

- 진학프로그램,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5조(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100억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
4.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
제16조(출연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장학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.